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0 선고 2013가합559746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에 대한 소 부분)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고1. 주식회사 C

2. D

3.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5. 2. 24.

판결 선고2015. 3. 1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442,559,342원과 그 중 439,504,192원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3. 3.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한다.
나. 피고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3. 22. 접수 제423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D와 A의 연대보증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09. 4. 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5억 원, 보증기간 2009. 4. 8.부터 2010. 4. 7.까지로 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C의 기업은행(변경 전 상호 : 중소기업은행, 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C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 C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③ 위약금[대출금채무의 이행기 경과 당시 남아있던 대출금 원본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까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연 2.2%)로 계산한 돈],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C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C를 경영하던 A, 피고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C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의 대출 등

1) 피고 C는 2009. 4. 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이행기 2010. 4. 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보증원금 4억 4,000만 원, 보증기간 2013. 10. 4.까지로 변경되었고, 피고 C의 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의 이행기도 2013. 10. 4.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와 A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1) 피고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이하 '코레일로지스'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2012년 4월경부터 피고 C가 의뢰한 화물을 중국으로부터 몽골, 카자흐스탄 등으로 운송하여 왔는데, 피고 C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3년 3월 초순경 그 운송을 중단하였다.

2) A은 그 무렵 피고 코레일로지스에게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으니 중단된 운송을 재개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 코레일로지스는 A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3. 3. 8. 운송을 재개하였다.

3) A은 2013. 3. 21. 피고 코레일로지스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 코레일로지스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3. 22. 접수 제42323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5) A은 2013. 3. 26. 피고 C의 피고 코레일로지스에 대한 997,277,427원의 운송료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

1) 피고 C는 이행기인 2013. 10. 4.까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6.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439,504,192원(= 원본 435,000,000원 + 이자 4,504,1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691,76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마. A의 파산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2. 27.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11832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코레일로지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호증, 을라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442,559,342원[= 보증채무이행금 439,504,192원 + 위약금 1,363,390원{=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행기 경과 당시 남아있던 대출금 원본 435,000,000원 × 52일(대출금채무의 이행기 다음날인 2013. 10. 5.부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인 2013. 11. 25.까지의 기간)/365일 × 2.2%(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 10원 미만 버림}] + 비용 1,691,760원]과 그 중 보증채무이행금 439,504,192원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인 2013.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의 피고 코레일로지스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이하 '원고 소송수계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소송수계인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인 A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인되어야 한다.

2) 관련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갑 제8,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코레일로지스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발송한

'사실조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에는 "4. 부동산 근저당 설정은 당사1) 가 채무자들2) 에게 운송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미변제 운송료 중 일부 금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제공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A이 작성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에는 "미수금 변제를 위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은 피고 코레일로지스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3. 3. 26. 피고 C의 운송료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코레일로지스와 A은 피고 C의 운송료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와 그 채무자 등을 지정함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실제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이나 등기부상의 채무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부상 등재된 채무자의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자의 채무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0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A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피고 C의 운송료채무이다. 결국 A은 자신의 채무가 아닌 피고 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나)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할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3. 3. 21. 현재 A은 아래 기재와 같이 638,674,241원(= 소극재산 1,128,674,241원 -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재산 490,000,000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3. 12. 현재 이 사건 지분의 공시지가는 78,720,000원($410\text{m}^2 \times 192,000\text{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지분의 시가가 극심히 하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시가는 2014. 3. 12. 현재 638,674,241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은 2014. 3. 12.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1) 소극재산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① 대출금채무 : 92,674,241원(= 49,994,735원 + 42,679,506원)

② 보증채무 : 610,000,000원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 38,000,000원

(다) 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348,000,000원

(라) E에 대한 차용금채무 : 40,000,000원

(마) 합계 : 1,128,674,241원(= 92,674,241원 + 610,000,000원 + 38,000,000원 + 348,000,000원 + 40,000,000원)

(2) 적극재산

(가) 서울 동작구 F건물 제105동 제1006호 : 490,000,000원

(나) 이 사건 지분

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에 의하면, A의 채무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92,674,241원의 대출금채무와 E에 대한 4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은 모두 피고 C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17의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2013년 2월경 가장 큰 거래처였던 태평양물산과의 거래가 중단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던 사실, 피고 C는 2013. 3. 21. 몽골, 카자흐스탄 등의 운송의뢰인들로부터 수억 원의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 코레일로지스에 대한 997,277,427원의 운송료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었고, 국민은행에 대하여 6억 1,000만 원, 기업은행에 대하여 3억 4,800만 원, 하나은행에 대하여 3,8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 피고 C는 그 무렵 피고 C의 사무실에 찾아온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있던 사실, 피고 C는 결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의 운송의뢰인들로부터 운송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3. 3. 21. 현재

A은 장래 피고 C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상당액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각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하게 될 것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갑 제12,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3. 3. 21.로부터 약 8개월을 경과한 2013. 11. 25. 파산 및 면책을 신청을 하였고, A은 그 무렵 재산으로는 이 사건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3,300,733,22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위 인정 사실이나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이 제3자인 피고 C의 피고 코레일로지스에 대한 운송료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코레일로지스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것은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 코레일로지스의 악의도 추정된다.

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소송수계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할 수 있다.

나. 피고 코레일로지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코레일로지스의 주장 피고 코레일로지스는 피고 C와 사이에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2012년 4월경부터 피고 C가 의뢰한 화물을 중국으로부터 몽골, 카자흐스탄 등으로 운송하여 왔는데, 피고 C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3년 3월경 그 운송을 중단하였다.

피고 C를 경영하던 A은 화물을 계속 운송하여 몽골, 카자흐스탄 등의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는 것이 피고 C의 채무 변제력을 갖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피고 코레일로지스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으니 중단된 운송을 재개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 코레일로지스는 A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3. 3. 8. 운송을 재개하였다. 피고 코레일로지스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3. 6. 7.까지 피고 C가 의뢰한 화물을

운송하였다.

피고 C는 몽골, 카자흐스탄 등의 운송의뢰인들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는다면 피고 코레일로지스에게 미지급 운송료를 모두 지급할 수 있었는데, 그 운송의뢰인들이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 코레일로지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행위로서 부당하지 않다. 원고 소송수계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법 제391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 코레일로지스가 피고 C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3년 3월 초순경 운송을 중단한 사실, A이 2013년 3월 초순경 피고 코레일로지스에게 A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으니 중단된 운송을 재개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 코레일로지스가 A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3. 3. 8. 운송을 재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 코레일로지스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발송한 '사실조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에는 "4. 부동산 근저당 설정은 당사3) 가 채무자들4) 에게 운송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미변제 운송료 중 일부 금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제공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A이 작성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에는 "미수금 변제를 위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코레일로지스와 A은 피고 C가 이미 코레일로지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운송료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A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인정을 뒤집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코레일로지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코레일로지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인권행사의 효과와 원상회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부인되어야 하고, 피고 코레일로지스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재판장판사김연하

판사박재민

판사나재영

별지

- 1) 피고 코레일로지스
- 2) 피고 C와 A
- 3) 피고 코레일로지스
- 4) 피고 C와 A